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검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171호, 2021. 5. 18. 일부개정, 2024. 5. 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”으로 정함(안 제23조의6 신설)
- 나. 법 제34조의21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3조의7 신설)
- 다. 야생동물 검역 관련 교육, 수입허가, 포상금 지급,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(안 제39조제3항 개정)
- 라. 야생동물 검역과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함(안 별표 2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예산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11.29. ~ 2024.1.7.) 결과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

-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6 및 제2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6(야생동물검역기관) 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”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.

제23조의7(검역관리인의 임무)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(이하 “검역관리인”이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정검역물의 입고, 출고,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
2.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또는 임상검사
3.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 협조 등에 관한 사항
5.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

제39조제2항제24호를 “24. 법 제57조(법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)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”를 “다음 각 호의”로

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
2.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교육
3.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허가
4.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별표 2 제2호노목부터 토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포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노. 법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 동물검역관의 출입, 검사, 질문,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	법 제73조 제2항제6의2호	100	150	200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23조의6(야생동물검역기관) 법		
		제34조의13 제1항에서 “대통령		
		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”이란		
		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		
		한다.		
<u><신 설></u>		제23조의7(검역관리인의 임무) 법		
		제34조의21제1항에서 따른 검		
		역관리인(이하 “검역관리인”이		
		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		
		와 같다.		
		1. 지정검역물의 입고, 출고, 이		
		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		
		2.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		
		3. 법 제34조의21제2항 에 따른		
		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한 시설		
		및 장비의 검사 및 관리에 관		
		한 사항		
		4.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		
		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		
		항		
		5.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		
		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		
		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		
		6.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		

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(생략)

② (생략)

1. ~ 24. (생략)

25.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
26. ~ 29. (생략)

30. 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, 같은 항 제11호·제12호·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
31. ~ 33. (생략)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

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24. (현행과 같음)

25. 법 제57조(법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)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
26. ~ 29. (현행과 같음)

30. 법 제73조제2항(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) -----

31. ~ 3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다음 각 호의 -----

-----.

1.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

2. 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교육

3.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허가</u> <u>4.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</u> <u>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</u> <u>5.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</u> <u>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1 - 7251